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부실채권(NPL) 정리를 목적으로 수협중앙회가 설립한 자회사(이하 ‘NPL 자회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NPL 자회사에 대한 대출에 한하여 회원의 여유자금 관리·운용상의 동일법인 대출한도의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단순오기 수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타법 개정시 오기사항 정비(안 제27조)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 일부개정(’25.1)시 조문 오기가 반영된 채로 개정됨에 따라, 주어로 잘못 표기된 ‘수협은행은’ 삭제

나. 동일법인 대출한도 적용 예외 추가(안 제27조의3 제2항)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자회사 등에 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대출 당시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5% 이내에서 20% 이내로 완화

다.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규정 정비(안 제70조)

위법한 명칭 사용, 공고·독촉사항을 해태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와 관련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준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을 준용토록 정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희(2026. 8.)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8. ~ 10.) 예정

3) 행정규제 : 사전규제심사 완료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수협은행은 회장”을 “회장”으로 한다.

제27조의3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27조의3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하는 대출
2. 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하여 중앙회 자회사·손자회사(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대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실행하는 대출로서, 법인에 대한 대출 총액 한도(직전 회계연도 말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3분의 1) 내에서 대출 당시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대출

제7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8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34조를 준용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위반정도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제2항, 제113조의3제3항 또는 제1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180조 제1항	100	200
나.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원·집행간부·일반간부직원·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하거나 독촉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또는 독촉을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독촉을 한 경우	법 제180조 제2항	100	2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2(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① 법 제55조제5항(법 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u>별표</u> 의 사업으로 하되, 해당 조합, 법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 한다) 및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6조의2(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① ----- ----- ----- ----- ----- ----- <u>별표 1</u>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u>수협은행은 회장</u>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가 법 제136조제4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① <u>회장</u>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7조의3(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① (생략)

<신 설>

제27조의3(회원의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① (현행과 같음)

1.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

<신 설>

제7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180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를 준용한다.

<신 설>

증기금 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하는 대출

2. 조합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하여 중앙회 자회사·손자회사(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대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실행하는 대출로서, 법인에 대한 대출 총액 한도(직전 회계연도 말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3분의 1) 내에서 대출 당시 여유자금 예치금 잔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대출

제70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법 제1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8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34조를 준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연 락 처	(051) 773 - 5431